

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, 100년 기업 안 나온다

안여태산

○ 우리나라 상속세

-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.

<표 1> 우리나라 상속세율
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억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0%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)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)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) |
| 30억원 초과 | 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%) |

- 최고 50%에 이르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서 일본(55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. 또한 수증자가 손자·손녀 등과 같이,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%가 세대생략가산액으로 추가됨. 이 경우에,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%가 추가 과세됨. 다만, 대습상속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.

- 최대주주는 그 지분율에 따라 보유주식 가액을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음.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함.

- ①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% 이하인 경우에는 20%(중소기업은 10%) 가산함.
- ②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%(중소기업은 15%) 가산함.

- 이에 따라 기업상속을 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이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50%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율이 최대 65%(50 + 50*3/10)에 달하게 됨. 상속세율 65%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, 세